

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2. 1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2월 2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2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계장 황해룡)

가. 제안이유

현재 사하구 구기 조례의 구기 및 문장등의 내용이 부산직할시 시기조례의 내용중 기관 명칭만 변경하여 인용함으로써 지역특성 등 자치구로서의 상징성이 전혀 표현되지 않아 사하구를 상징하는 구 상징 마크가 제정됨에 따라 구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일부 조문의 개정
- 구기의 모양과 구의 문장 및 휘장 개정

3. 검토의견

현행 구기조례는 1988. 5. 1 제정되어 구기 및 문장이 부산직할시의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 구를 상징하는 지역특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구기 및 문장은 사하구를 상징하고 있을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

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.

5. 토론요지

〈찬성토론 김광옥위원〉

새로 제정되는 구기 및 문장은 사하구를 상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찬성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)